

—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무인민원발급제도 시행을 위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하여 민원인 편의 확대.

3. 주요내용

- 일반 공인에 전자문서(무인발급기)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 하는 내용(제2조제6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- 사무관리규정 제3조, 제36조(전자 관인)
-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(구미시)

5. 검토의견

-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입니다.
-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게 될 대상민원(총 31종)에 대한 전자로 이미지 한 공인을 사용하게 될 근거 조례입니다.
- 2001년부터 단계별로 발급민원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음.